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시리즈 ⑤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진행순서

□ 개요

- 일시 : 2020. 11. 10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 주최 : (재)여의도연구원

□ 목적 및 취지

- 여의도연구원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진행
- 본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유가족, 관계단체 등의 애환을 청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사고방지 관련 규제 등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하고자 함

□ 진행 순서 (진행: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시간	내용	비고
[1부] 개회식 / 10:00~10:25(25')		
10:00~10:02	개회 및 국민의례	
10:02~10:05	여의도연구원장 모두발언 및 내빈소개	
10:05~10:08	비대위원장 인사말씀	
10:08~10:11	원내대표 인사말씀	
10:11~10:20	내빈 인사말씀 (강은미(정의당) 김미애, 임이자 의원)	※변동가능
10:20~10:25	사진 촬영	
[2부] 정책간담회 / 10:25~10:57(32')		
10:25~10:33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p.1
10:33~10:41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	p.16
10:41~10:49	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	p.22
10:49~10:57	황인경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	p.26
[3부] 폐회 / 10:57~11:10(13')		
10:57~11:10(13')	Q&A 및 마무리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21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상황실장

1. 들어가며

2006년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시작되었다. 2012년 산재사망에 대한 입법발의, 세월호 참사와 가슴기 살균제 참사이후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2015년 청원입법, 2017년 입법발의가 있었다. 입법발의 이후 8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과 시민들의 재난 참사는 이어지고 있고, 법안은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어 왔다. 결국 2020년 4월29일 38명이 사망한 한 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을 향한 기업의 사죄, 정치권의 분향소 방문과 재발방지 입법 약속, 경찰과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가 각본처럼 흘러가고, 결국 참담한 죽음의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만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오해와 호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한국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최소한의 상식과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20년 25일 만에 10 만명의 국민이 입법안에 동의청원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90일안에 청원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2.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문제의식

1) 기업처벌강화 없는 대책은 유명대책으로 귀결

-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을 향해서만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정부는 수 십 페이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 짜여진 일정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
-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은 실종되고, 기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법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음. 그리고, 일터는 여전히 불법 천지로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현실이 반복되었음. 기업처벌의 강화가 없는 각종 개선대책은 유명대책으로 전락하게 됨.

2) 한국 산재사망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

○ 재래형, 반복형 사망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

-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 비중이 높음. 기술적 원인보다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 반복형 사고 비중이 높음. 맨홀 공사, 밀폐 공간 작업, 선로보수 작업 등
-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 사고 사망이 다발 : 현대중공업 467명 사망. 매월 0.8명 사망, 당진 현대제철 2013년 1년 반 동안 17명 사망. (주) 한화 대전공장 9개월 동안 8명 사망. 매년 산재사망 다발 기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 등 동일 건설사에서 발생
-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이 높음.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45%를 상회하고 있음.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이 90% 가까이 되는 건설업을 포함하면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음. (노동부는 공식 하청 산재통계가 없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중대재해 사망원인의 비중변화>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 보다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높은 비중으로 조사됨
- OECD 국가의 산재사망에서 상위 순위는 저 개발 국가임.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규모,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노동 분야, 특히 산재사망 분야에서 최하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임.

○ 반복적, 재래형 산재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재사망 처벌의 형해화
- 위험의 외주화 : 원 하청 수탈구조 속에서 간접고용의 확산
- 감독관 인력 부족, 형식적 감독
- 노동자 참여권, 위험작업 거부권, 알권리 보장의 형해화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형해화

3) 기업이 법 준수 및 안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사업장 법 위반 비율이 90%,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이 하급, 말단관리자에 대한 처벌, 400만원 벌금 수준인 한국에서 법 제도개선은 무용지물
- 산업재해는 기업의 안전투자, 안전인력, 안전시스템, 고용구조 및 노동시간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은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로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 연계되지 않음.
-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낮아, 기업의 법 준수 유인요인이 미미하고,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백안시 되거나, 기업 간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재난참사에 대해 기업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투자를 하도록 하는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3.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처벌실태 분석

1)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 재범률 높은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14건 산업재해 판결 분석

[201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노동부]

○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83%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구 약식)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건수 2007년 1,752건..... 2017년 6,439건 . 3배 증가
- 최근 10년간 1심 법원이 자유형(징역, 금고)의 실형 선고는 매년 5명이하
- 2017년 처리된 총 13,187건 중 구속된 건수는 1건(0.007%).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도 정식 기소된 경우는 613건 (4.64%) 약식명령 청구 건수는 10,934건 (82.91%)이었음

○ 산업안전보건법범죄 재범률 97%. 일반 형법 범죄 43%의 2배

- 97%에 달하는 재범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현황
- 2017년 초범이 482명, 1범이471명, 2범이 300명, 3범이 246명 등 아주 많은 비율의 반복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범죄의 재범비율 약 97%이고, 일반 형법 범죄는 재범률이 43%로 2배이상 더 많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들은 대부분 전과 1범부터 3범까지 차지. 2017년의 경우 전과 4범이 153명, 전과 5범이 96명, 전과 9범 이상도 105명
- 산업재해가 반복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 뿐 아니라, 동일기업에서 반복 발생되고 있음이 증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통계 (자연인)

구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연소	공소기각	계
건수	64	22	981	1,679	50	130	4	2	2,932
비율	2.18	0.75	33.46	57.26	1.71	4.43	0.14	0.07	

*1심 분석결과이므로 최종판결은 더욱 낮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통계 (법인)

구분	벌금	선고유예	무죄	연소	공소기각	계
건수	1,193	33	110	1	2	1,339
비율	89.1	2.46	8.22	0.07	0.15	100.0

*1심 분석결과이므로 최종판결은 더욱 낮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처벌수준

구분	자연인		법인	
	빈도	평균(만원)	빈도	평균(만원)
최근 5년 (전체)	1,678명	421	1,193 개소	448

2) 말단 관리자, 노동자에게 처벌이 집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의 직책 중 1위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35.7%)

○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도 다발

순위	직책	명수
1위	운전기사	98명
2위	근로자	82명
3위	사원	50명
4위	안전담당자	42명
5위	하수급 책임자	24명

3) 한국의 환경관련 범죄보다 형량도 낮고, 처벌도 미약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하한형 도입

-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 오염 :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 위의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오염물질 배출 : 1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징역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가중 처벌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 징역/ 5년이상 유기징역
- 누범의 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17년 12건 접수

○ 화학물질 관리법

- 명의대여 영업,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 미 제출, 화학물질 취급기준 미 준수, 점검하지 않거나 기록 비치하지 않는 경우, 위해화학물질 관리자 미 선임, 화학사고 발생하여 사상자 발생등 26개 조항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2017년 1심 공판에서 접수된 242건 중 유기형 87건, 집행유예 40건. 재산형 88건

4) 재난참사 말단 공무원 처벌. 기업처벌 요원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등도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요원
- 인 허가, 안전점검등 공무원 처벌도 솜방망이와 말단관리자 처벌로 귀결

○ 세월호 참사

순번	행위자	직책	죄명	판결		
				1심	항소심	상고심
1	X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여객선 안전점검 업무 총괄 및 관리)	업무방해 ⁴²⁾	무죄 ⁴³⁾	항소기각	상고기각

○ 대구지하철 참사

-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 : 무죄
- 대구지하철 공사 기업 : 무죄
- 1019,1080호 기관사 각 금고 4년
- 대구지하철 공사 법인 벌금 1,000만원

○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10명 사망, 194명 부상)

-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 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고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경주시청은 ‘불문경고’에 그침

4. 외국의 산재 및 재난참사 처벌 현황

1) 기업 살인법 제정 국가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기업 살인법>을 제정. 영국, 캐나다는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를 포괄 적용, 호주는 산재사망만 적용
- 호주, 캐나다 제정 기업 살인법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 하고 벌금 등 기타 제제도 병과함. 특히, 법 제정의 취지가 사망에 대한 기업경영책임자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적용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기업에 포괄적 의무 부여
- 2020년 호주는 기업 살인법 적용 주를 확대하고 있고, 기업의 형사처벌도 20년형, 25년형으로 대폭 상향하여 법이 통과되었음.
- 영국은 전 세계에서 산재사망이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2008년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감소효과를 가져왔음. 벌금의 상한선이 없고, 판결가이드라인으로 매출액의 2.5%- 10%내에서 부과

국가	제정년도	명칭	주요 내용
호주	- 2003년도 호주 준주 제정	산업 살인법	- 산업재해. 종사자, 하청 노동자, 재택근무자, 견습생, 자원봉사자 까지 대상
	-2020년 1월 호주 빅토리아 주 제정	- 2020년 확대된 법 안은	- 기업 (원청, 하청), 정부, 상급관리자, 정부기관, 최고경영자,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 2020년 5월 호주 퀸즐랜드 주 제정	명칭은 각각 차	-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 부작위 경우등 처벌
	- 2020년 10월 호주 서호주 제정	이 있으나, 주요 내용은 동일.	- 벌금 : 개인- 25만달러 / 기업 - 125만달러 - 징역 “ 25년 형 *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 있음 * 처벌의 기업 비용 최고한도 : 500만 달러 (약 60억)

국가	제정년도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년도	단체의 형사 책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일반재해 모두 적용 -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이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 - ① 개인 -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② 기업 - 전과기록 / - 보호관찰 /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마련 - 정책, 기준, 절차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 - 일반인에게 공표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장치를 위한 정책. 기준, 절차
영국	2007년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일반재해 모든 사고 대상 - 피해대상: 모든 사람 (person)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체가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 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2)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 2019 한국산업안전공단]

1) 영국

(1) 산업안전보건법

- 벌금형, 금고형, 보상명령, 사회보상명령, 사망 시 보도명령 등이 있음
- 유죄입증 피고인에게 처벌과 별도로 보상명령 병과 가능. 보상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 설명해야 함.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이 목적임.
- 2013년 12월 이후 보상명령의 상한액이 없어짐

(2) 기업 살인법

- 산재사망, 시민재해 모두 적용

-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 의회 지침으로 기업 총 매출액의 2.5- 10%내에서 부과

(3) 처벌 실태 (산업안전보건청 2018 통계 자료)

- 2017년-2018년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검찰 기소 건수 517건 중 유죄판결은 493건 (95%)
- 동기간 산업안전보건청 법 위반 벌금 총액은 1조1,001억780만원.
- 1건당 부과된 벌금 평균은 2억2천 266만원임.
- 2016년 2월부터 새로운 양형지침 적용 5배가량 증가함.
- 2012년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에 관한 법 제 85조는 약식 판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을 과거 2만 달러 (2,402만원) 에서 상한이 없는 벌금으로 상향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현황]

년도	기업	벌금	원 환산
2017년 6월	Tesco Stores Ltd	5백만 파운드	75억 7천 350만원
2017년 9월	Merlin Attractions Operations	5백만 파운드	75억 7천 350만원
2016년 11월	Iceland Foods ConcoPhilips (대형마트 체인)	3백만 파운드	45억 4천590만원
2017년 1월	KFC	95만 파운드	14억3천935만원

○ 사례

- 2014년 12월 천장 해체작업 하던 25세 노동자 추락사망
- 사고조사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자격검증 없이 선정, 사고 이후 영터리 위험평가서 작성 드러남
- 노동자 과실로 사고은폐 시도
- 기업의 과실치사혐의로 30만 파운드(4억5천459만원) 벌금. 회사 책임자 징역 20개월 선고. 하청업체 75,000파운드 벌금 하청업체 책임자 징역 1년 선고

2) 미국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으로 구분
- 민사벌칙: 고의 반복위반/ 중대또는 경미한위반/ 위반행위의 미시정/기세의무 위반등 4가지
- 형사벌칙: 고의적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점검 누설 및 서류작성 미비
- 2016년 산업안전보건청 물가상승률 적용 민사벌금 인상
- 2015년 12월 법무부와 노동부는 처벌효과 증대와 사고예방 위해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 책임강화 및 사업주의 피해자 보상제공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MOU 체결
- 1995년 118건의 고의적 위반이 발견된 삼성중공업 괌 지부격인 Samsung Guam Inc 826만 달러 (99억 2,026만) 벌금 부과
- 2010년 수족관 돌고래에 의한 조련사 익사사고 75,000달러 벌금 부과
- 2016년 미국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30억 벌금 부과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 주요 사건 (벌금액 기준)]

기업명	벌금부과일	납부벌금(달러)	원 환산
Didon Miling INc	2017.11.17	1,837,861	22억727만1,061
First Marine Llc	2018.07.17	693,491	8억3,288만2,691
Dudley Lumber Company Inc	2017.11.17	415,475	4억9,898만5,475원
Marshall Pottery Inc	2017.11.10	545,160	6억5,473만7,160원
City Redevelopment LLC	2018.06.30	630,000	7억 5,563만원
H.B/Fuller Company dba Adhesive System.Inc	2018.07.25	587,564	7억566만4,364원

[미국 역대 최대 벌금액 부과 기업]

기업명	벌금부과일	납부벌금(달러)	원 환산
BP Products North America	2009.10.29	50,610,000	607억 8,261만원
BP Products North America	2005.09.21	14,567,000 205,000	174억9,496만원
IMC Oertilizer/Angus Chemical	1991.10.31	1,000,000	12억 100만원
Imperial Sugar	2008.07.25	6,050,000	72억6,605만원
O&G Industrial INC	2010.08.03	1,000,000	12억 100만원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각각의 법에 분산되어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처벌 미약	- 산재사망, 시민재해 모두 적용 - 사업장, 제조물, 다중이용시설, 궤도 운행, 위험물 업소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의 대상	- 노동자, 하급관리자만 주로 처벌 - 발주자 처벌 거의 불가능	-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 처벌 - 명목상 책임자 아니어도, 사고원인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 처벌 - 건설, 조선업 발주자 정의. 처벌대상으로 규정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사망 시 원청 책임자 처벌 불가능	-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단계 하도급 비롯한 하청 노동자 - 원청 기업의 책임자 처벌
	원료 제조물질의 이용자 처벌 어려움. 화학물질, 가습기 등	-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부과 및 처벌
	안전보건 부실감독, 인 허가, 불법증축 및 규제완화에 대한 공무원 처벌 미약하거나 하급 공무원 징계	담당 공무원과 그 상급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까지 포함하여 실질적 책임자 처벌
	도급 및 위탁으로 책임자 찾기 불가능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관리 시 공동의무 부과
처벌의 근거	-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법적 규정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 - 분산적 조직구조로 기업최고책임자 법 위반 입증 어려움	-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법령상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외에 위험방지의무 의무 부여 - 발주자의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작업중지, 도급금지, 화학물질 관리 등 사업주 의무 포함 - 기업의 안전정책, 투자, 인력 및 조직문화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중대재해 처벌 -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과관계 추정 도입 : 중복 발생, 반복적 법 위반, 산재은폐 등
처벌의 양형과 종류	- 산재사망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 하한형 없어 평균 400여만원 벌금 - 과징금 일부 도입 - 영업정지 요청, 제한적 공포 제한적 실시 - 판사 재량으로 낮은 형량 남발	- 하한형 도입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험방지의무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 법인 내부에 생명, 위험방지의무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 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가능 -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행관찰, 공 계약 입찰 제한, 병과 가능. 처벌사실의 공포 - 유 무죄는 법원이 하되, 양형의 범위는 전문가가 참여 양형위원회 구성
손해배상의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한도로 손해배상

○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80% 동의
징벌적 손해배상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83.6% 동의

[2020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여론조사]

- 기업 대표이사 처벌 낮다. (세월호 73.7%, 가습기 60.8%)
- 검찰, 사법부 판단 공정하지 않다 (세월호 70%, 가습기 62.8%)
- 한국기업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 생각한다 : 70%
- 가해기업, 소유주 최고 경영자 징역 등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80.5%
- 안전관리 등 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80.6%
-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83.6%

○ 발주처의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요구에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함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를 비롯하여 건설현장, 조선업의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원인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혼재작업임
- 2020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처에게 안전보건의 의무를 신설부과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었던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발주처에게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사망 처벌조항은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등에 대한 발주처와 원청의 법 위반을 산재사망과 연동시키지 않아, 당사자 처벌이나 조직적, 구조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다단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적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피해 적용대상 노동자를 특수고용,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종사자 전체로 확대

○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함

- 구조적으로 책임분산을 하는 구조에서 기업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의 처벌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입증책임>의 문제임
- 여수 대림 산단 폭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울산 황산 누출사고, 충북 지게차 산재은폐 등 기업은 매번 사고에서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옴.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사고조작, 산재은폐 시도가 조사결과에서 밝혀져도 기업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이에 운동본부 법안에서는 반복적 법 위반, 조사 방해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기업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처벌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였음

○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다

-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진 사고였음. 인허가가 나서 는 안 되는 곳을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사고가 커졌다는 것이 밝혀졌음.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하대 봉사단도 산사태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결국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펜션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잘못을 제대로 묻지 못함
-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많음. 하지만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해태함으로써 위험을 방조하기도 하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허가나 관리 감독은 정부 및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음. 불법적인 인허가나 관리감독업무의 소홀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 등

-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예방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임. 배상액 산정에는 고의나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 효과적인 예방효과를 위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로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또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냄

○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판결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범죄적 인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죄 무죄선고는 법원에서 하되,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회에는 피해자 추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행관찰’ 신설

- 법인의 처벌에서 이행관찰을 신설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과 유사한 취지임
- 법 제정 취지가 <재발방지>에 있으므로, 처벌 이후에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관찰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재발방지 및 예방점검 및 개선조치, 공익적 급부 제공, 공무원의 정기적인 감독, 개선사항의 공개> 등임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질문들?

1) 처벌강화 보다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 감독강화 등은 주요한 과제임. 그러나, 십 수년 동안 진행된 법 제도개선, 320여명 수준에서 550명 수준으로 증원한 감독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이 감소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사업주들은 90%이상이 법을 위반함. 수십, 수 백개의 법 제도개선은 실질적인 산재사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왔음
- 재벌 대기업 또한 수많은 중대재해에서 수 천 건의 법위반이 적발되었고,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비용은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낮음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제도 개혁, 노동자 참여제도 개선 등 산재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산안법 개정 등으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도개선이 되어도 처벌과 연동되지 않아 현장에서 무력화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과제임.
-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불가능하고, 감독이 되더라도 과태료 수준의 처벌, 사망사고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 수준으로는 기업의 법 준수를 유인할 수 없음
- 십 수년 동안 개정을 거듭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사업장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풍토로 획기적 개선이 되어야, 법 제도개선이나, 감독강화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음

2) 중소기업사업장의 처벌로만 귀결된다 ?

-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사망의 대부분은 하청업체이며, 건설업, 조선업, 제철, 발전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임.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하청 산재사망에서 원청의 말단관리자나 하청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이 처벌받도록 하는 것임
- 영국은 기업 살인법 제정 이후 산재사망 만인률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사망 만인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세임. 영국은 사고사망 자체가 한국보다 11배나 적고, 국제적으로 사망 만인률이 가장 낮은 국가임. 사고사망보다 직업성 질병, 정신건강 등으로 산재요인이 이미 이동
- 영국은 원 하청 구조가 한국처럼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처벌도 매우 강력함. 영국의 기업 살인법은 법 체계상 기존 산안법 및 형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임. 다시 말해 자연인 중 그 누구도 처벌하기 힘들지만 명백히 기업 내에 ‘경영실

패'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법인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탄생한 법임. 영국의 법 적용 사례는 영국의 원 하청 구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 살인법의 2개의 법 적용의 사법시스템의 결과임.

- 한국의 원 하청 구조와 집중되는 하청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청 책임 부여 법제화는 되었으나, 원청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해결하여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재발방지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법리적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특정한 관리책임자 혹은 노동자를 처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기업이 안전관리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리적 구조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특정한 말단 관리자만 처벌해 왔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분산시켜 놓고, 원 하청 구조에서는 하청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 넘겨 왔음. 이에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서도 하청업체나 말단관리자만 처벌되어 왔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대 법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기소할 때 위반행위자는 법령의 세부적인 의무 규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노동자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음. 종전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표자등 고위관리자를 법 위반행위자로 처벌하는 몇 건의 판결이 있기도 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도 말단의 노동자를 위반행위자로 판단하고 있고, 기업의 대표자 및 고위관리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이 불가능, 가슴기 살균제참사 등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있는 처벌도 불가능함.

4)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 참사 후 발표된 산안법 개정과 특례법 개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가?

○ 정부 추진 법 개정 동향

- 2020년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사망 처벌에서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위반 명시.
- 특수고용노동자 직종별 적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도 적용받게 됨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대책으로 산안법에 법인 과징금 신설,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의무 신설, 법무부 다중인명 사상 사고에서 형량 합산하는 특례법 개정 추진 발표
- 구체적인 법 조문의 내용은 밝혀진 바 없음

○ 정부추진 법 개정의 한계

- 노동부의 구형기준, 양형기준 개선은 필요한 사항임. 특히, 산재사망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무수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구형기준, 양형기준 개선과 동시 진행되어야 함.
- 노동부, 법무부의 개정 추진은 형량이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한 추진임.
-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에 도입된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의무> 새로이 추진하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를 법무부 추진 특례법 개정과 연동하여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임.
-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즉시 문책사항으로, 위험요소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담당자, 안전책임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비정규직으로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보고할 수 없음
- 설령, 현장의 위험요소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고내용에 있는 것과 사고발생이 직접 연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또한, 경영책임자의 인지여부만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선 지시 없이 포괄적 개선지시만 하더라도 처벌과 연동할 수 없음.
- 노동부 개선 대책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제출되고 있음. 과징금 처벌은 재벌 대기업에게는 안전투자 비용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벌 대기업에게는 사업장 개선으로의 연동을 기대할 수 없음.
- 또한, 산재사망 처벌이 안전조치, 보건조치, 원청 책임 등 법에 명시된 조항위반으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본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문재인 정부의 건설사고 예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육길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1. 건설노동자 사고사망자 현황

(1) 전 산업 대비 건설 노동자 사망자 비중

-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건설노동자가 절반에 해당함.
- 건설노동자는 대한민국 전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산업	1,090	992	955	969	964	971	855
건설업	516	434	437	499	506	485	428
건설업 비중	47.3%	43.7%	45.8%	51.4%	52.5%	49.9%	50%

(2) 공사규모 별

- 19년 기준 전체 사망자 중에서 70% 이상이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함.

	3억 미만	3~20억 미만	20~120억 미만	120억 이상	미분류	총계
2018년	162(33.4%)	99(20.4%)	99(20.4%)	114(23.5%)	11(2.3%)	485
2019년	151(35.3%)	89(20.8%)	71(16.6%)	111(25.9%)	6(1.4%)	428

(3) 사고유형 별

- 추락에 의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전체 사고의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음.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무너짐	끼임	감전	기타	총계
265 (61.9%)	30 (7.0%)	26 (6.1%)	23 (5.4%)	23 (5.4%)	22 (5.1%)	10 (2.3%)	29 (6.8%)	428

2.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1)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사고사망자 통계 숫자늘음

- 올해 1월 초,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건설업 사망자 수가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이나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때문이라고 자찬함.
- 주로 산업재해 관련 통계는 전년 자료 취합과 분석 탓에 보통 4~5월께 발표하는데 연초에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때마침 정부에서는 고용관련 통계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를 부풀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

<2020. 1. 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보도자료 중>

□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 건설업(485명 → 428명), 제조업(217명 → 206명), 기타 업종(269명 → 221명)

○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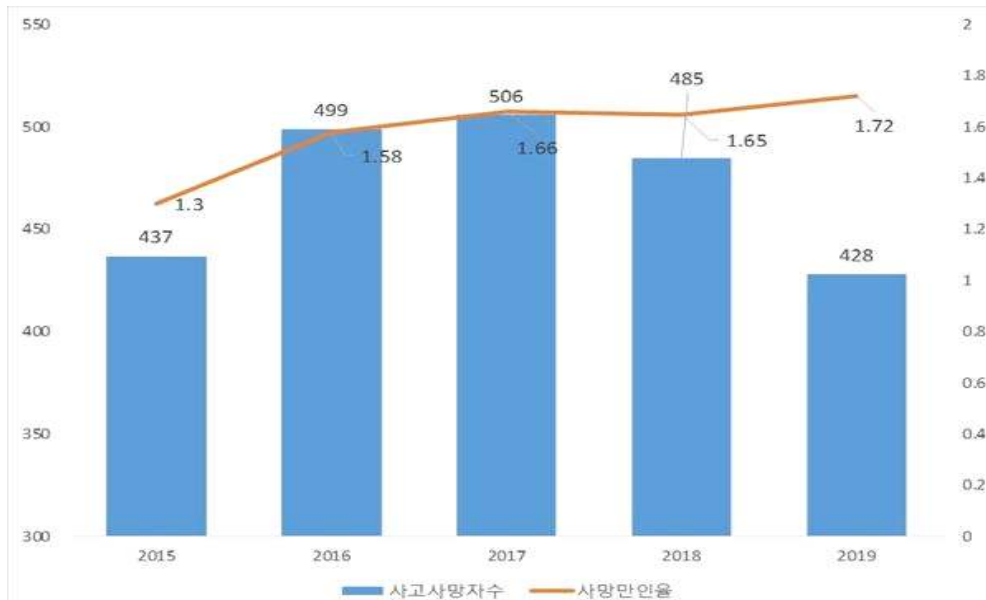
- 역시 우려대로 이 발표는 숫자늘음으로 밝혀짐. 2019년 건설업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2018년 294만명에서 2019년 249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65명에서 1.72명으로 오히려 증가함. 이는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통계 조작이었음.

(2) 부처 내 협업 부재와 부처 이기주의

-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산재사망사고를 절반

으로 줄이기 위한 감축대책을 발표함.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고사망만인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함.

<2015~2019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 부재와 부처 이기주의에 있음.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며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 용자 사업'이 있음.
- 추락사고가 잦은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강관 비계' 대신 안전한 일체형 발판인 '시스템 비계'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미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의 최대 65%까지 현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임. 다시 말해 현금이 지원되는 기존 사업이 버젓이 있는데도 빚을 져야 하는 용자제도를 '획기적인 대책'으로 발표한 것임.
-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올해 9월 11일 국토위 김교홍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양상까지 나타남. 국토교통부는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발의과정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의 내용을 비판하며 법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임.

(3) 대통령과 여당의 건설노동자 홀대

-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이 11일 오전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도 안된 12월 27일,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김용균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위로함.
-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인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MBC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들을 직접 만나 해결을 약속함.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만인 10월 11일 국회에서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도, 분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음. 그리고 반년이 지났어도 유족들과 노동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시업처벌법은 아직까지도 제정될 기미도 없음.

(4) 건설안전특별법의 문제점

- 전술한 바처럼 올해 9월 11일 국토위 김교흥 위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긴급하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됨.
-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산안법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며 시설물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부문에는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정부조직법 및 위반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산업안전관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객체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1. 노동자가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작업에서 즉시 배제하고 2. 노동자가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음.
- 먼저 건설업의 특성상 작업배제는 즉시 해고로 이어지는데 현장 안전조치 미준수

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례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일관적으로 판결함.

※ 중앙노동위원회 징2018부해241외 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 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은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 또한 노동자의 책무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 삭감도 심각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음.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으로 사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임. 또한 산재보험 급여 삭감은 산재 예방효과가 미비하며 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산재 은폐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함.

※ 대판 2010두51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개선방향

- 정부는 사망자 감소 등의 통계 숫자놀음에 연연하지 말고 각종 사고감축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왜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을 증가하는 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시 철저하고 냉정하게 해야 함.

- 건설 사고예방 정책의 주관 부서들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갈등을 멈추고 사망자 감소와 산업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함.
-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은 이천화재사고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이고 기민한 자세로 움직여야 할 것임.

토 론 문

민동식 한국노총 전국산재노조 위원장

I. 서론

산업재해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엄중한 법 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불의의 산재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을 잃은 유가족과 영구 불구자가 된 산재노동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은 그들만의 아픔이나 책임일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산재노동자가 적정 요양을 통해 장해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복지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 그들의 국가 기여도에 합당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중대재해(사망)발생 후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 처벌에 대하여

오늘도 이 나라 노동현장에는 기업주들의 인명경시 풍조속에서 산업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산재왕국이라는 국가적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법개정 또는 보완 이전에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엄격히 적용 처벌한다면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산재추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례 1)

A씨는 약 20년의 도장(도색)공의 숙련공으로 근무중 아파트 외벽공사중 19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씨는 최초 작업시 본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용 밧줄을 직접 설치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주는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를 옥상에 배치하여 밧줄을

옮겨주도록 하였고, 결국 무 경험자인 일용직 노동자가 설치하여 제공한 밧줄을 밟고 작업중 밧줄이 풀려 A씨는 사망한 것이다.

● 검찰과 법원의 처벌 수위 : 사업주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됨

▶ (사례 2)

B씨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던중 작금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자 가정 생계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하였고, 주된업무는 신설공장 천장에 크레인 설치작업 보조업무중 약 8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 검찰과 법원의 처벌 수위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조서를 받은후 검찰에 이첩되었고, 검찰은 사업주에게 유가족과 합의를 계속 중용하면서 검찰청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사업주 및 유가족 대표를 참석시켜 조정위원 앞에서 금 일천만원 (10,000,000)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하였다.

그 후 검찰은 구두로 사업주에게 걱정하지 말라, 벌금 조금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중대재해(사망) 발생 처벌 수위의 현주소이다.

결론적으로 법규 개정애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현행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2. 산재 요양 및 재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산재노동자의 경우 양질의 요양과 재활을 통해 노동력이 단 1%만이라도 잔존한다면 반드시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산재를 당한 산재노동자가 충분한 요양과 재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요양 및 재활 체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토론자는 산업재해 당사자로서 차제에 의견수렴 과정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개진코자 한다.

즉, 산재노동자의 요양 종결은 상처부위만을 놓고 판단하면 절 때 안될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재노동자는 충분한 요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활을 통해 원직장 복귀가 전제 되어야 함으로서 단순히 상처 부위만을 놓고 요양범위를 설정하면 안될 것이다.

3. 산재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과제

첫째,

- 간병급여 문제점

중요한 것은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직접적인 요양급여(치료비)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증의 산재노동자가 요양중 의학적 소견으로 타인의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면 개호료(간병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행 산재보상법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간병급여 제도 도입전에는 요양중에 지급하던 개호(간병)료를 종결후에는 지급하는 규정이 없었음. 중증의 산재노동자가 요양중일때와, 요양종결후의 장애상태가 동일하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요양종결후 일체의 간병료 지급을 하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간병급여 제도를 도입한 것임.

(사례) 사지마비의 경우 24시간(항상) 개호 대상자(1등급)가 요양중일때와 요양종결후에도 장애 상태가 변동없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사지마비의 경우 요양중일 때 전문간병인 1일 67,140원 / 요양종결후 간병급여 1일 41,170원)

둘째,

-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남발 및 지연이자 도입 / 소송 비용청구 문제점 등

산재유가족 및 산재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행정법원에서 취소(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남발하고 있는 작금의 행위는 시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쟁점 상황 이외에는 항소 남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산재노동자가 행정 소송 패소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가족 또는 본인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남발하여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문제화 된 사실이 있고, 오래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후 한 동안 소송비용 청구 행위를 하지않고 있던중,

작금에 또다시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최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지연이자 제도 도입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한 최소한의 산재노동자 보호 제도로써 개선이 요구됨.

▶ (사례 1)

A씨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과로사로 뇌출혈 발병하여 최초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

지공단은 불승인 처분하였고, 이에 A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취소(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단은 고법에 항소하였고, 고법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까지 하였고 A씨는 대법원 확정시까지 약 4년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더욱 심한 장애로 고착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딱한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임. 즉 4년전 최초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매월 받는 휴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보존 및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가 되었다면 가정 파괴 및 중증도의 장애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본 사례와 같이 공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후 소급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할뿐 지연이자는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못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없음.

▶ (사례 2)

B씨의 경우 산재보상법상 장애 8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행정 소송 최종심까지 약 3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되었음.

공단은 최종 확정 판결후 3년 6개월전 B씨의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장애 연금 대상자일 경우 3년 6개월후 소송이 확정 되었다면 매년 증감(변동)되는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받을수 있으나, B씨의 경우 지연이자는 물론 지급 시점에 평균임금 증감 혜택도 못 받는 사례 등의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Ⅲ. 토론을 마치며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의 힘’ 에서 산재노동자들의 애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점으로 산업안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는 오늘날까지 양산되고 있고,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걱정 요양을 통해 원직장 또는 평소와 같은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상처 부위만을 놓고 판단 조기 종결 조치를 일삼고 있는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산재 사고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딱한 현실과 그 고통과 아픔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산재노동자 가족들을 위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산재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산업전사와 산업의 역군이란 이름에 합당한 처우를 위해, 산재노동자 지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매년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 도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현실 및 예방정책

황인경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통역팀장

I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¹⁾

-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연간 평균 1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함.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하거나 불법체류자의 재해까지 감안하면 재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수는 2017년 22만 1578명, 2018년 22만 2374명, 2019년 22만 3058명임
-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16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만 546명이 재해자이고 사망자는 308명임
-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나 적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여 최근 3년 동안 재해자는 1만6061명(사망자 265명)임.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II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산업재해의 현실

-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의 문제
 -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외국인노동자의 이해도·몰입도 저하
 -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재해 발생 시 적정대처에 어려움
-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실적달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업안전수칙 무시 관행
 - 사업장에서 납기일을 맞춰야 하거나 집중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센서와 같은 안전장치 강제해제로 인해 잦은 사고 발생
- 외국인노동자의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 개인적으로 장비착용을 귀찮아하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장비 착용 거부
- 외국인노동자 또는 사업주/내국인관리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쉽게 간과하

1)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2020.10.26. : 2020.10.25.자 송옥주 의원 국회보고서 인용 보도

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사업주/내국인관리자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노동환경에 미숙한 입사초기 외국인노동자의 재해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 선호
 - 산업재해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업장에서 공상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 외국인노동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가중
- 외국인노동자의 소위 3D 사업장 기피현상 증가. 특히, 도금사업장, 폐기물처리장, 프레스기 사용 사업장 등에서 사업장변경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
-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없이 사업장이동금지 정책으로 인한 외국인의 피해 증가
- 산업재해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 높은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III,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제언

-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사업장의 고용허가제 신청 및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환경 구축
 - 근무환경 개선에 무관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제상 외국인노동자의 임의 사업장변경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의 자체 관리·감독 미흡 또는 소홀 등에 대한 제재
- 수시로 철저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외부 안전관리·감독 강화
-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모국어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시행
 - 비록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 통역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보통 특정 용어 사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집중도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통역원의 활용 요망
- 사업주/내국인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맞춤형 산업안전교육 진행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확대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없애 외국인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재해자 입증 및 구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 비용 저렴화 추진